

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079
----------	------

2023년 9월 8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8월 14일 황유정 의원외 45명
2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3. 상정일자 :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3년 9월 4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황유정 의원)

1. 제안이유

-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일하는 방식 변경과 함께 새로운 직업의 창출이 이어지고 있음.
- 디지털 기술의 습득은 재직 여성의 직무역량강화를 통한 고용유지전략은 물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필수요건이 되면서 여성의 디지털 기술 습득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의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직무역량교육

이 요구됨.

- 이에 따라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디지털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시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6조제1항제8호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
-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사회로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의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(안 제6조제1항제8호 신설)

- 개정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경제활동촉진사업)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 1. ~ 7. (생략) <u><신설></u> 8. (생략)	제6조(경제활동촉진사업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<u>디지털 직무역량 강화</u> 9. (현행 제8호와 같음)

- 디지털 기술은 여성들이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적 독립성과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성평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도 하지만,
- 기술의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ICT에 대한 접근성과 사용에서의 성별 격차는 디지털 성별 격차 심화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¹⁾, 코로나19로 원격교육, 재택근무 등이 필수로 자리잡으며 디지털 양성평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.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정보화수준 종합평가지표에서 여성은 96.4점, 남성은 103.6으로 남성이 더 높게 측정되었음.
 - 뿐만 아니라 각 부문에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측정되어 디지털 성별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.

<2022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종합>

구분	일반국민	여성	남성
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	100	98.4	101.6
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	100	92.8	107.2
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	100	92.8	100
디지털정보화 수준(종합)	100	96.4	103.6

- 따라서 디지털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경력단절

¹⁾ 정보통신정책연구원, ‘[초점] 팬데믹 시대의 디지털 양성평등’, 2021.7.13.

예방을 위해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매우 타당하다 하겠음.

- 또한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디지털화된 직무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·고령자나 장기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ICT 교육 등 디지털 환경 적응을 위해 필수적인 직무 교육과정을 실시하고, 청년이나 실무자, 고학력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디지털 분야 실무·전문 교육과정 중심의 추진이 필요해 보임.

3 종합 의견

- ICT에 대한 접근성과 사용에 대한 성별 격차는 디지털 성별 격차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, 코로나19로 원격교육, 재택근무 등이 필수로 자리 잡으며 디지털 양성평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.
- 동 개정안은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디지털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여성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발의되었으며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짐.
- 대상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 직무역량 교육 등을 통해 성별 디지털 격차를 해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황유정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07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황유정, 강석주, 고광민,
곽향기, 구미경, 김경훈,
김규남, 김영철, 김용일,
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
김재진, 김태수, 남궁역,
남창진, 민병주, 박상혁,
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
박춘선, 박환희, 서상열,
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
유정인, 윤기섭, 윤종복,
이병윤, 이봉준, 이상욱,
이소라, 이영실, 이종배,
이종태, 이종환, 이효원,
임춘대, 정준호, 최민규,
최진혁, 허 훈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46명)

1. 제안이유

-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일하는 방식 변경과 함께 새로운 직업의 창출이 이어지고 있음.
- 디지털 기술의 습득은 재직 여성의 직무역량강화를 통한 고용유지전략은 물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필수요건이 되면서 여성의 디지털 기술 습득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의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직무역량교육이 요구됨.
- 이에 따라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디지털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디지털 직무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6조제1항제8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경제활동촉진사업)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8. (생략)</p>	<p>제6조(경제활동촉진사업) ① 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8.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</u></p> <p><u>9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u></p>